

산 립 청 시 정 요 구

제 목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산지복구비 납부 미조치

기 관 명 강원도

관 계 기 관 원주시

내 용

「산지관리법」 제19조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, 산지일지사용허가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지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(이하 “대체산림자원조성비”라 한다)을 미리 내야 하며,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 등을 할 수 있다.

또한, 같은 법 제19조제9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서 발행일부터 20일 이상 9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.

다만, 납부하여야 할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처음 고지한 납부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.

같은 법 제38조에 따르면 산지전용 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재해방지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(이하 “복구비”라 한다)을 허가권자에게 예치하여야 하며, 허가권자는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예치한 복구비가 재산정한 복구비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.

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·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·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아니하였거나,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.

원주시(○○○○과)에서 [표 1]과 같이 ○○○○건설(주)의 원주 ○○○○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신청에 따른 관련법 검토요청(○○○○과-00000, 2015. 00. 00.)이 있어

[표 1] 원주 ○○○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산지전용허가협의 요청서

구 분	목 적	사업시행자	전 용 대 상 산 지 (㎡)			
			소 재 지	계	보 전	준보전
산지전용허가	원주 ○○○○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에 따른 산지전용	○○○○건설(주)	원주시 ○○○ 000-0번지 일원	21,178	-	21,178

원주시(○○과)에서 원주○○○○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산지전용협의 회신(2015. 10. 27.)을 아래 [표 2] “원주 ○○○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산지전용허가협의 내용”과 같이 하여, 원주시(○○○○과)는 원주시고시 제2015-000호로 ‘원주 ○○○○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(변경)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’(2015. 00. 00.)하였다.

[표 2] 원주 ○○○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산지전용허가협의 내용

협 의 지	협의면적	협 의 기 간	협 의 조 건
○○○ 000-0번지외 0	21,178	2015.10~2018.12.31	○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9,474,500원 납부 ○ 산림복구비용 134,093,000원 납부

그 후, 원주시(○○과)에서 ○○○○건설(주)에 2016.4.22.일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림복구비용을 납부토록 하였으나, ○○○○건설(주)에서는 2016. 5.

12.자로 ‘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기간연장 신청(○○2016-00)’하여, 원주시(○○과)에서 2016. 7. 22.까지 ‘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 납부기간을 연장(○○과-0000호, 2016. 5. 24.)’ 하였다.

그러나, 2016. 7. 23.부터 2016. 9. 20. 정부합동감사 감사일 현재까지 ○○○○건설(주)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9,474,500원과 산지복구비 134,093,000원을 납부하지 않았는데도, 원주시(○○과)에서는 ‘산지전용 중지 명령’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.

조치할 사항 원주시장은

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산지복구비 미납에 따른 ‘산지전용 중지’등의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,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지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를 바랍니다.